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2011 · 6 · 8 조례 제 895호 일부개정 2014 · 10 · 15 조례 제1072호 일부개정 2014 · 12 · 31 조례 제1102호 (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 일부개정 2016 · 7 · 5 조례 제1247호 (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) 일부개정 2017 · 11 · 10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2020 · 10 · 7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10호 (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) 일부개정 2024 · 9 · 30 조례 제2134호 (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, 제명개정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천시 무형 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7·11·10, 2024·9·30〉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이천시 무형유산(이하 "무형유산"이라 한다)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. 〈개정 2014·10·15, 2024·9·30〉
- 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 유단체로 한다. 〈개정 2020·10·7, 2024·9·30〉

[전문개정 2014·10·15]

제4조(무형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무형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·10·15, 2024·9·30〉

[제목개정 2024·9·30]

제5조(무형유산 보존·전승 활동)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

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·10·15, 2020·10·7, 2024·9·30〉

- 1.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
- 2.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
- 3.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[제목개정 2024·9·30]

- 제6조(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)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무형 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·예능의 전수교 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·10·7, 2024·9·30〉
 -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·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·10·7, 2024·9·30〉
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 〈개정 2024・9・30〉

[제목개정 2024·9·30]

- 제7조(위원회 설치)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〈개정 2024·9·30〉
 -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 〈개정 2016·7·5, 2024·7·1〉
- **제8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〈개정 2014·10·15, 2024·9·30〉
 - 1. 무형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계획
 - 2.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
 - 4.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
 - 5.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**제9조(지원금 등)**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·10·15, 2020·10·7, 2024·

(추 5)

9 · 30>

- 1.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, 공연, 전시, 보호·육성의 기획,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
- 2.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- 3.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
- 4.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 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.
- **제10조(준용)**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·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와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〈개정 2014·10·15, 2014·12·31, 2024·9·30〉
- 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4·1 0·15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·10·15 조례 제107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4·12·31 조례 제1102호,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- ⑨ 「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 중 "「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"를 "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칙〈2016·7·5 조례 제1247호,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2항 중 "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"를 "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"로 한다.

부칙〈2017·11·10 조례 제135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·10·7 조례 제164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·7·1 조례 제2110호,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"를 "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"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〈2024·9·30 조례 제2134호,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